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8. 17 선고 2021가단114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20. 5.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20. 5. 20. 접수 제140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6.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337,331원을 53,337,33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C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로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E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2021. 4. 6.을 기준으로 그 채권액이 121,230,359원에 이른다(갑 제2, 3호증).

C은 2020. 5. 20.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4호증의 1, 5,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F조합, E은행, G, 피고 등에 대하여 267,867,58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갑 제6호증),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정읍시 H 대 720㎡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가액 합계는 255,177,020원으로 보인다(갑 제4, 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226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의 경매사건에 관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337,331원은 53,337,33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갑 제10호증,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피고의 배당 자격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29177 판결 참조).

판사 허윤범

